경기도 따복 대학생 기숙사 입주 신청서

접수번호					
	성명	홍길동	생년월일 학적상태		2000.01.01
인적사항	대학/학과	사회과학대/행정학과			재학중 입/복학예정 (2022학년도 1학기)
	혼인여부	미혼 ■ 기혼 □	무주택여부		무주택 ■ 유주택 □
	직장 재직 현황	재직 □ 재직하지 않음	연락처		(010) 0000-0000
e 메일					
주소 (주민등록상주소)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				
주소 (현 실거주 주소)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				
사유 (현재 거주 주소로 입 주 신청해야 할 사유)	사유가 있을 경우만 기재				

입주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입주신청을 요청합니다.

2022년 01월 01일

신청인: 홍길동 (인/서명)

안양대학교 귀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- 1.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·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□동의합니다. □동의하지 않습니다.
- 가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자 : 국토교통부장관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기 도시공사, 지방자치단체장 및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(사회보장정보원)
- 나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(전세임대 포함, 이하 같다.)의 임차인(입주대상자 포함, 이하 같다.)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,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, 임대주택의 관리,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,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,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
- 다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:

구분	제공 동의	개인정보 내역
기본		주민등록등(초)본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(의료)보험증,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, 청약저축정보, 주택소유정보, 공공임대주택 계약·입주 정보
소득		건강보험보수월액, 국민연금소득신고액(표준보수월액),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 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(농업소득·임업소득·어업소득·임대소득·기타사업소득)·근로소득(상시근로자소득·일용근로자소득·자활근로소득·공공일자리소득)·연금소득·기타소득·퇴직소득, 농업직불금, 국민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산재보험급여, 별정우체국연금급여, 보훈대상자명예수당, 보훈대상자보상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실업급여, 지방세정(재산세·취득세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,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자활근로내역
자산		토지·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, 자동차 등록원부, 차적정보,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
기타		기초수급대상자증명, 장애인증명, 차상위(자활,장애인,한부모,본인부담경감대상,우선돌봄)증명

- 라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[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] 6개월, [입주대상자] 5년, [계약자] 영구
- 2.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**■동의합니다.** □**동의하지 않습니다.**
- 가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·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,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(사회보장정보원),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조사 수탁자
- 나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, 임대주택의 관리,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,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,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
- 다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, 임차인 선정·계약 및 입주 정보
- 라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[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] 6개월, [입주대상자] 임대차계약시까지, [계약자] 임대차 계약기간
- 3. 본인은 위 1~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■동의합니다. □동의하지 않습니다.
- 4. 본인은 위 1~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**■받았으며**,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본인 세대주(공급신청자)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·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(갱신계약 포함)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**■동의합니다.** □**동의하지 않습니다.**
- 5. 본인은 위 1~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**■동의합니다.** □**동의하지 않습니다.**
- 6.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·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.
- ※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서명(본인만 작성하면 됨)

성 명	생년월일	신청자와의 관계	서명 (또는 인)	
홍길동	1234. 05. 06	본인	홍길동	

주)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,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

2019년 01 월 01 일

안양대학교 총장 귀하

안양대학교 복학예정 확인서

본인은 공고일 현재,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(20 년 월)에 안양대학학교 복학예정자로서 공급대상 중 "대학생"으로 신청 하였으며,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및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안양대학교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, 해당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

학교명	복학예정시기	주민번호			
안양대학교		* * * * *			

2019 년 01 월 01 일

신청인: 홍길동(인)

안양대학교 총장 귀하

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 정보) 제공 동의서

1.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
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
신청자	홍길동			
주 소	경기도 안양시 만안	구 <i>삼덕로 37번길 22</i>		

2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(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) ※ 유의 사항 필수 참고(본인만 작성)

신청자와의 관 계	동의자 성 명	,		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 지 아니함 ²⁾ (서명 또는 인)
본인	홍길동		홍길동	홍길동

- 1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, 배우자, 신청자의 세대주,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·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2)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(동의하지 않는 경우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).
- 3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: 뒷면 참조
- 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: 제출일부터 6개월
- 5. 정보제공 목적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



금융회사등의 장,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

금융기관 등의 명칭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
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- 나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다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- 마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- 바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- 사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- 아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- 자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- 차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- 카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- 타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- 파. 「우체국예금・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하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기관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금융정보 등의 범위

- 1. 금융정보
- 가.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
- 나.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: 잔액 또는 총납입금
- 다.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: 최종 시세가액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.
- 라.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: 액면가액
- 마. 연금저축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- 2. 신용정보
- 가.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- 나.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- 3. 보험정보
- 가. 보험증권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- 나. 연금보험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유의사항

- 1.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(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·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·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2.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, 앞면에서 "유효기간"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. 향후,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,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3.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								
신 청	성 명		홍길동	생년월일	2000.01.0	1		
(0 인	주 소	경기도 안	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년	번길 22				
	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							
구분		해당 여부	물건 소재지	금액	계약자	신청자와의 관계		
기타 자산	임차보증금	임차보증금 예 □ 아니오 □		원	[임차인]			
				원	[임차인]			
				원	[임차인]			
	분양권	예 □		원	[수분양자]			
				원	[수분양자]			
				원	[수분양자]			
부채	임대보증금	임대보증금 예 □		원	[임대인]			
				원	[임대인]			
				원	[임대인]			

1. 작성대상

가. 대학생 : 신청자 본인

- 나. 사회초년생 : 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(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)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.비속,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
- 2.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,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, 어떠한 처벌(계약해지 등)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- 3.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
 - 가. 임차보증금 : 해당 주택, 상가 등의 **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)**
 - *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
 - 나. 분양권 : 해당 주택 **분양계약서 사본** 및 제출일 현재까지 **분양대금 납부확인원(대출금액이 포함된**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)
 - 다. 임대보증금 : 해당 주택,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)

신청인: 홍길동 (인)

2019 년 01 월 01 일

안양대학교 총장 귀하

- ※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(벌칙)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※ 주택법 제106조(과태료)

입주자자격,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